

1. 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운행규정 및 초과속 운전자를 처벌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제17371호, 2020. 6.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을 신설하고 초과속 운전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관련 당사자간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표기방식 및 기재사항에 대한 정정절차가 없는 것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및 승차인원을 정함 (안 제2조의2, 안 제33조)
- 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면허 취득의무가 제외됨에 따라, 운전면허의 조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안 제54조)
- 다. 초과속 운전자의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함(안 별표28)
- 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 대상자를 가해자·피해자에서 당사자로 변경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서식 중 가해자, 피해자 란을 삭제함(안 제129조의3 제1항, 별지 서식 제144호의6서식, 제144호의7서식)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9월 중 실시 예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안전확인신고 된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및 전기 모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것을 말한다.

제19조제1항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8조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3조의2 제목·본문 중 “자전거가”를 “자전거등이”로 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동승자를 태울 수 없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법 제50조제10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 1인
2. 전기 모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2인

제53조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3조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7조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29조의3제1항 중 “가해자·피해자”를 “당사자”로 한다.

별표 2 표 구분 자전거신호등의 신호의 뜻 란 중 “자전거는”을 “자전거등은”으로 하고, 비고 1. 중 “자전거를”을 “자전거등을”으로 하며, 비고 2. 중 “자전거는”을 “자전거등은”으로, “자전거”를 “자전거등”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표 구분 자전거신호등의 설치기준 란 중 “자전거 횡단이”를 “자전거등의 횡단이”로 한다.

별표 6 II. 개별기준 제1호나목 표 일련번호 134의 표시하는 뜻 란 및 설

치기준 및 장소란 중 “자전거”를 “자전거등의”로 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2호나목 표 일련번호 205 및 206의 표시하는 뜻란 및 설치기준 및 장소란 중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원동기 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로 하고, 일련번호 210의 표시하는 뜻란 및 설치기준 및 장소란 중 “자전거”를 “자전거등의”로 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호나목 표 일련번호 317의 표시하는 뜻란 및 설치기준 및 장소란 중 “자전거와”를 “자전거등과”로 하고, 일련번호 318의 표시하는 뜻란 및 설치기준 및 장소란 중 “자전거만”를 “자전거등만”으로 하고, 일련번호 320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 중 “자전거가”를 “자전거등이”로 하고, 일련번호 325의 표시하는 뜻란 중 “자전거의”를 “자전거등의”로 하고, 일련번호 333의 표시하는 뜻란 중 “자전거의”를 “자전거등의”로 하며, 장소란 중 “자전거가”를 “자전거등이”로 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표 일련번호 534의 표시하는 뜻란 중 “자전거의”를 “자전거등의”로, 장소란 중 “자전거”를 “자전거등의”로 한다.

별표 9 표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통행할수 있는 차종란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로 하고, 비교6.가. “자전거”를 “자전거등”으로 한다.

별표 20 1. 표의 (주) 1.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8 제2호 표의 일련번호 1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속도위반	제93조	○ 속도위반(100km/h 초과)하여 3회 이상 운전한 때
----	------	------	----------------------------------

별표 28 제3호가목 표의 일련번호 2의3·2의4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일련번호 3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주) 3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로 한다.

2의3	속도위반(100km/h 초과)	제17조 제3항	100
-----	------------------	----------	-----

2의4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제17조 제3항	80
-----	----------------------------	----------	----

3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제17조 제3항	60
---	---------------------------	----------	----

별표 28 제3호나목(1)(비고)2.·3.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9 표 일련번호 1의 내용란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로 하고, 일련번호 13의 내용란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지 제144호의6 서식 중 발급대상자(당사자)란의 “[] 가해자, [] 피해자”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44호의7 서식 중 성명란의 “□ 가해자, □ 피해자”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9조의3, 별지 제144호의6서식 및 제144호의7서식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16일 전에 제작·수입·판매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형차 및 2018년 3월 22일 전에 제작·수입·판매된 전기 모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된 경우 이 개정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만 제2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형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기 모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요건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으면 그 확인받은 날 이후부터 계속하여 제2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개정규칙 시행 전에 제작·수입·판매된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안전확인신고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형차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기 모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안전요건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으면 그 확인받은 날 이후부터 제2

조2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된 것으로 보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동일한 형식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품명, 모델명, 제조사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 (속도위반 운전자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28 제2호의 일련번호 제18에 따른 속도위반의 횟수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최고속도보다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한 경우부터 산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u>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u>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u>제2조의2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u> 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안전확인신고된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및 전기 모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 <u>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제33조의2(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가 갖추어야 할 구조)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자전거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어야 한다.

<신 설>

제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

-----.

제33조의2(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등이 갖추어야 할 구조) -----
-----자전거등이 -----

-----.

제33조의3(동승자를 태울 수 없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법 제50조제10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의 승차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u> : 1인
	2. <u>전기 모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u> : 2인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u>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u>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 --- ----- ----- <u>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u> ----- -.
제54조(운전면허의 조건 등) ① (생략) ② (생략) 1. <u>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u> 가. ~ 라. (생략) 2. · 3. (생략) ③ ~ ⑥ (생략)	제54조(운전면허의 조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u>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의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 가. ~ 라.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3조(필기시험의 출제비율)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영 제46조	제63조(필기시험의 출제비율) -- -----

에 따른 도로교통법령 등에 관한 시험 및 영 제4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점검요령 등에 관한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출제비율은 영 제46조에 따른 시험을 95퍼센트, 영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5퍼센트로 한다.

제70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 ① 영 제48조제2항 또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10. (생략)

②·③ (생략)

제75조(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 ① 법 제84조제1항제4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

제70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 ① -----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5조(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 ①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금지 통지)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u>자동차등</u>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을 금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자동차등의 운전금지통지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9조의3(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u>가해자·피해자</u>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144호의 6 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금지 통지) ----- ----- ----- <u>자동차등</u> <u>(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u> ----- ----- ----- ---. 제129조의3(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① ----- ----- -----<u>당사자</u>----- -----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교통기획과	
연 락 처	(02) 3150 - 0659